

제3차례 대한 보험사 대우, 관리 분쟁조정사례

이 성 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책임역

1. 금융분쟁 조정사례

가. 다툼이 없는 사실

'97. 5. 1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금 액 : 400,000,000원, 보험기간 : '97. 5. 12~'98. 5. 12, 보험 목적 : 광주시 북구 ○○동 △△빌딩 7층 레스토랑 시설 일체, 보험조건 : 화재보험 보통약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 6. 26 18:16경 신청인의 레스토랑 내 연회실에서 전기배선 절연열화의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레스토랑 시설이 전소되고, 동 건물의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내부가 심한 열화로 손상되었으며, 동 건물의 6층 천장 등이 소방수 등에 의하여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피신청인이 건물주가 별도로 가입한 화재보험계약에 의거 건물주에게 254,704,275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번 화재를 감식한 ○○대학교 교수의 감식결과에 따르면 발화원인이 건물의 천정 및 벽체에 설치된 전등과 비상표시등의 과열과 동 전기배선의 절연열화에 의한 합선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7층 천정에는 신청인이 설치한 전선과 건물주가 설치한 전선이 혼재되어 있으며, 동 건물의 화재경보시설 및 소방시설의

불량으로 손해가 확대되었고, 건물의 방수상태가 불량하여 누수되는 등 건물주의 건물관리가 부실하여 화재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화재가 신청인이 임차한 7층에서 발화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의거 피신청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신청인에게 구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번 화재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건물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고, 발화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물주를 대위한 피신청인의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다.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각 진술서의 기재내용에 보험사고 당시 보험목적물이 소재한 건물이 누수 등으로 누전의 위험이 있었고, 또한 소방시설의 관리가 부실하여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번 화재를 감식한 ○○대학교 교수의 감식결과, 화재는 연회실 내의 벽, 천장에 설치된 전등과 소화전, 비상구표시등의 과열과 동 전기배선이 절연열화하여 합선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각 전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임차인의 전기설비 관리하자에 대한 최소한의 입증도 없는 현 상태에서 이

번 화재가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번 화재사고로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신청인에게 구상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본 사례에 대한 소고

가. 서설

손해보험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대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험자 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와 제3자에 대한 대위로 구별할 수 있다. 보험자 대위는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이 권리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본 건의 경우 화재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건물주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하게 되었다. 한편,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차물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본 건 발화지점이 신청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발생요건과 효과도 간략히 살펴보자.

나.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1) 의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요건

(가) 제3자의 행위로 보험사고 발생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3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

※ 1. 제3자의 범위

제3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 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¹⁾가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또는 사용인은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2. 제3자의 행위

제3자의 행위라 함은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 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방화와 같은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실화 등을 이유로 한 채무 불이행은 물론 선장의 공동해손(海損) 처분으로 인한 경우와 같은 적법행위도 포함한다.

(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보험자 대위권의 발생시기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이다. 또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컨대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운전사고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적법하지 못한 보험금 지급이므로 이로 인하여 보험자는 구상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²⁾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한다. 이 점은

1) 대법원 2000.6.23. 선고 2000다9116 판결

2) 대법원 1994.4.12. 94다 200 판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대위가 인정되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와 구별되는 점이다.

(다)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보험자의 대위권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대위로써 피보험자의 동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임의대위와 다르다. 피보험자 등이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권리는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시효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의 효과

(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즉 이러한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별도의 의사표시나 대항요건은 불필요하다.

(나)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한 경우의 효력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보험자의 협조 의무

보험자가 비록 보험금지급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제3자와의 사이에 계약관계 또는 당사자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협조가 없으면 그 대위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내용, 보장방법 등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적어도 보험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인정됨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라) 대위권 행사의 제한

1)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가액 1,000만원의 물건에 대하여 전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물건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전손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인 600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600만원에 대해서만 대위하고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4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일부보험의 경우

상법에 의하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일부보험의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일부보험의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보통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분할하게 되고, 그 행사에 있어서도 경합하게 된다.

3. 결 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제시된 분쟁조정사례의 경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화재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차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어 보험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